대구가톨릭대학교 「창업휴학제」 안내

우리 대학은 학생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창업을 위한 휴학을 인정하는 '창업휴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개요

인정대상	창업휴학 신청시점 기준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 및 공동대표
휴학 기간	1회 1년, 최대 2년(4학기)

2. 진행 절차

신청 **(학생)**	▶	**심의** **(창업교육센터)**	▶	**휴학 신청** **(창업교육센터)**	▶	**휴학 승인 통보** **(창업교육센터)**
일반 휴학 신청 기간		신청 서류 검토 후 승인		수업학적팀에 신청		신청 학생 대상 휴학 승인 통보

창업 활동 **(학생)**	▶	**실태 점검** **(창업교육센터)**
휴학 기간 중		창업기업 운영실태 수시 점검

3. 세부 사항

가. 창업휴학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위해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만 인정하며, 창업교육센터가 지정한 제외 대상 업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업휴학 승인 여부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제외 대상 업종
 : 금융 및 부동산(K64-66), 부동산업(L68), 숙박 및 음식점업(I55-56), 무도장 운영업(9129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9112),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9124),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나. 창업교육센터는 신청서 심의 및 창업 활동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정기, 수시로 실시합니다. 이때 창업기업은 창업교육센터의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다. 2년 연속으로 창업휴학을 신청할 경우 일반휴학 신청기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가. 신청서류
- 창업휴학원서(13호 서식, 본인 · 보호자 · 지도교수 날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사업계획서(12호 서식)

나. 제출방법 : 창업교육센터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다. 제출기한 : **2024. 08. 30.(금)까지**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5. 제출 및 문의처
 : 창업교육센터 053-850-2680 / 산학협력관(B8) 102호